

# 행정제재 조치 [이탈자 발생률과 여행사 책임위반 규정은 달리 적용]

## 가. 이탈자 발생률에 따른 제재 기준

- 이탈자 발생률의 정의
  - 국가별·여행사별 누적 입국자 수 대비 해당여행사에 사유설명 등 없이 단체관광의 일행에서 이탈하거나 동일 항공편으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(단,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국관리기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)
- 국가별·여행사별 행정제재는 월(月) 누적 이탈자 발생률을 산정하여 아래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
  - 누적 이탈자 발생률(%) 산출식
    - [월 이탈자 수(미출국자 포함) / 월 입국허가자 수] x 100

### 【국가별 제재 기준】

- 국가별 이탈자 발생률이 5% 이상일 경우 법무부에서 유관기관(해당 광역자치단체, 문체부 등) 의견을 들어 해당 국가에 대한 무사증입국 제도 정지 여부 결정

### 【여행사별 제재 기준】

- 여행사(현지 모객여행사, 국내 전담여행사)별로 이탈자 발생률을 산정하여 여행사별로 제재

| 제재 종류    | 이탈자 발생률(%)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경고       | 3% 이상 ~ 5% 미만 |
| 1개월 업무정지 | 1회차 5% 이상     |
| 2개월 업무정지 | 2회차 5% 이상     |
| 3개월 업무정지 | 3회차 5% 이상     |
| 지정 취소    | 4회차 5% 이상     |

- ※ 항공편당 여행사별 이탈자 발생률이 10% 이상 또는 항공편당 여행사별 이탈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누적 이탈자 발생률에 따른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발생 즉시 해당 여행사(현지 모객 및 국내 전담 여행사)는 1개월 업무정지 조치

### <예 시>

- 2. 1. A항공편으로 210명 입국(B여행사 110명, C여행사 100명)

B여행사 10명 이탈, C여행사 3명 이탈인 경우

☞ B여행사 : 이탈자 발생률 9.1%이나 이탈자 10명이므로 1개월 업무정지

C여행사 : 이탈자 발생률 3%이고 이탈자 3명이므로 제재 없음

※ 월 누적 이탈자 발생률은 별도 산정

## 나. 여행사 책임 위반 따른 제재 기준

| 제재 종류    | 위반 내용   |
|----------|---|
| 경고       | 이 지침에 따른 여행사의 책임(역할)을 위반한 경우<br>* 다만 단체관광객 명단 전송 시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와<br>인적사항을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정 |
| 1개월 업무정지 | ·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<br>·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|
| 2개월 업무정지 | ·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1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|
| 3개월 업무정지 | ·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1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<br>·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2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|
| 지정 취소    | ·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단이탈자를 발생시킨 경우<br>· 여행사가 책임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경우  |

※ 1개월 업무정지가 아닌 가중하여 2개월 업무정지 조치

## 다. 제재 조치 만료 후 조치사항

-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탈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법무부(출입국심사과), 관할출입국기관, 전라남도(전라남도관광재단)에 제출
-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지정 신청 가능하나, 재지정 신청 시 이탈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전라남도(전라남도관광재단)에 제출
-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다음 날부터, 재지정한 경우에는 재지정한 날부터 이탈자 발생률을 새로이 산정
  - 다만,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산정할 경우에는 제재 검토 기간 내의 입국자 수와 이탈자 수도 포함하여 산정